

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(제2022-61호, '22. 12. 23.)

2. 개정사유

-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

3. 주요내용

-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계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

*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(Good Recycled, GR) 제도

- (개요)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·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품질·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
- (근거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

- ‘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’를 ‘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 확인서’로 지정(‘서식 19’ 신설)
- ‘재활용 가루 세탁비누’ 등 25개 품목을 ‘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’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(‘별표 6’ 신설)

4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 없음”

5.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: “붙임”

6. 시행일 : 2023. 00. 00.